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. 8. 21 선고 2013가합22178 판결 [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김▽옥 (6♡◇@16-6▽▽▽719)

안▽시 단♣구 석△△■ 4♣, ■◇1호(선♡2동, ●△♣6-18)

송달장소 시×시 마△△■3@0, ●●♣정▽▽▽1◇◆◆-2, 한△△라자)

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

피고 1. 김▼호 (2◇◇◇22-1*****)

서울 은◇◇◇진□4로, □00, ○○동 ○○호(◇◇◇ 2, 은□▲▲운 상△마을)

2. 김◆라 (70XXXX-2XXXXXX)

최후주소 안▽시 단♣구 인△△△길 40, ○○동 ○○호(고@동, ○○빌라)

3. 전▲옥 (65XXXX-1XXXXXX)

최후주소 안▽시 상■구 용▽▽▽3△▽×본◆동)

4. 김◇택 (57XXXX-1XXXXXX)

인천 중◆ 하△▽×로□66, ○○동 ○○호(중●동, 영□□□테이트)

변론종결 2014. 7. 24.

판결선고 2014. 8. 21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김◆라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92,189,979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원고에게,
가. 피고 김▼호는 192,189,979원 및 이에 대한 2013. 10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나. 피고 김◆라는 피고 김▼호와 각자 위 가.항의 금원 중 □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4. 6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다. 피고 전▲옥, 김◇택은 피고 김◆라와 연대하여 위 나.항의 □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3. 12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▼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▼호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김◆라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김◆라가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전▲옥, 김◇택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전▲옥, 김◇택이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의 가.항, 다.항 및 피고 김◆라는 피고 김▼호와 각자 원고에게 192,189,979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김◆라는 2011. 3.경 그 소유의 ○○시 ○○동●●●5-3 4□1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

한다)에서 '빛△△△요●병원'이라는 명칭으로 병원(이하 '이 사건 병원'이라 한다)을 운영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1. 3. 21. 피고 김◆라의 대리인 피고 김◇택과 사이에,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임대차보증금 □00,000,000원, 권리금 20,000,000원, 계약기간 2011. 4. 1.부터 2014. 3. 31.로 정하여 위탁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제1약정'이라 한다), 피고 김◆라에게 임대차보증금 □0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피고 김▼호는 2012. 4.경 피고 김◆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,000,000원에 임차하였고, 2012. 6.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'한◇◇◇●병원'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2. 6. 19. 피고 김▼호의 대리인 피고 전▲옥과 사이에,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보증금 □00,000,000원, 계약기간 2011. 4. 1.부터 2015. 3. 31.까지로 한 위탁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제2약정'이라 한다), 보증금 □00,000,000원은 원고가 피고 김◆라에게 지급한 □00,000,000원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.

마. 원고는 그로부터 2013. 6. 26.까지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운영하였고, 피고 김▼호는 2013. 6. 27.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, 3, 7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동일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 김▼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1) 보증금 □00,000,000원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김▼호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약정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차보증금 □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급식비용 92,189,979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2호증의 1, 갑 제7,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약정상 피고 김▼호로부터 환자식 및 직원식의 경우 매 식사마다 3,000원을, 간식의 경우 실비를 지급받되, 매월 말 피고 김▼호에게 급식비용을 청구하고, 피고 김▼호는 국민건강 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월의 급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에게 급식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, 피고 김▼호가 미지급한 2013. 6.분까지의 급식비용은 92,189,979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 김▼호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급식비용 92,189,9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) 소결론

그렇다면 피고 김▼호는 원고에게 192,189,979(= 보증금 □00,000,000 + 미지급 급식비용 92,189,979원) 및 이에 대한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김▼호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. 10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김◆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92,189,979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) 원고의 주장

피고 김◆라는 2012. 4.경 피고 김▼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,000,000원에 임차하였고, 피고 김▼호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, 피고 김◆라는

피고 김▼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,000,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 원고는 피고 김▼호에 대한 미지급 급식비용 92,189,979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무자력인 피고 김▼호를 대위하여 피고 김◆라에게, 임대차보증금 200,000,000원 중 92,189,979원의 지급을 구한다.

나) 판단

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금전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, 피고 김▼호가 2013. 6. 27.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김▼호가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◆라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.

2)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보증금 □00,000,000원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

이른바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, 양수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,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에 있어 삼면계약일 경우와 상대방의 승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고, 그 효과에 있어서도 양도인의 채무가 면책적으로 이전하는 경우(면책적 인수)와 병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(병존적 계약인수) 등이 있어 이는 구체적 약정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,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피고 김◆라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그대로 남아 있는 점, ② 이 사건 제2약정의 계약서 말미에는 이 사건 제2약정이 이 사건 제1약정의 내용을 인정하고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,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약정 당시 피고 김◆라에게 임대차보증금 □00,000,000원을 지급하였을 뿐,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피고 김▼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, ④ 피고 김▼호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한 피고 전▲옥은 이 사건 제2약정 체결일인 2012. 6. 19. 원고에게 피고 김▼호가 아닌 피고 김◆라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□00,000,000원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·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

피고 김▼호는 원고와 피고 김◆라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약정을 인수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하였고, 이로써 피고 김▼호는 피고 전미라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피고 김◆라는 피고 김▼호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약정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□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김◆라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. 6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피고 전▲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전▲옥은 2012. 6. 19. 원고에게 피고 김◆라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□00,000,000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 전▲옥은 피고 김◆라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□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전▲옥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. 12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라. 피고 김◇택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◇택은 2012. 2. 14. 원고에게 피고 김◆라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□00,000,000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고, 이 사건 병원 폐업 등 어떠한 사유로든 원고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피고 김◆라와 함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 김◇택은 피고 김◆라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□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김◇택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. 12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전미라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92,189,979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, 피고 김▼호, 전▲옥, 김◇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고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동연 판사 방진형 판사 박노을